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4. 8. 27.

발 의 자 : 김문수 · 조인철 · 박희승
정일영 · 김남근 · 양부남
김현정 · 문금주 · 황명선
정진욱 · 이건태 · 강경숙
백승아 · 진선미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 징계의결 요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의 행정적·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원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의 금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과태료) ①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8조(과태료) ①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u></p>